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희원, 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. 서울시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,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,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.
-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,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위촉한 52팀의 홍보대사 중에는 서울시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.
- 이에 특별한 홍보성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보대사의 연임은 최대 2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 (안 제3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하되,”를 “하되, 2차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촉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</p>	<p>제3조(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하되, 2차례 --.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(위촉)제3항에 2차례 연임을 명시하고, 추가로 연임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¹⁾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해당규정의 홍보대사 총원 영향] 홍보대사 총원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해당 규정은 연임예외에 관한 사안 일 뿐 홍보대사 총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